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허종식 · 이훈기 · 이재관
김정호 · 안호영 · 유동수
허영 · 박정 · 노종면
한민수 · 서영석 · 김교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8호의2·제8호의3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판매사업”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7조 중 “배전사업자”를 “배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u>전기 판매사업</u>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 ----- ----- <u>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 전기 판매사업</u> -----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u>전기판매사업자</u>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2. ----- ----- <u>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u> ----- -----.
3. ~ 8. (생 략) <u><신 설></u>	3. ~ 8. (현행과 같음) <u>8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u>
<u><신 설></u>	<u>8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u>

